##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44

발의연월일: 2020. 8. 31.

발 의 자:고민정・김경만・강훈식

신영대 · 송갑석 · 김성환

오영환 • 박성준 • 이용선

최혜영 · 김남국 · 김용민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개정에서 조세감면·자금지원·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,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에 여전히 한계를 나타낸다는 지적이었음.

이에 선정요건을 완화하고,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 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유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변동에 대응한 국내공급망 강화,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유턴 대상업종에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'을 추가하고, 해외사 업장 청산·양도·축소요건 면제 가능성을 부여함(안 제2조).
- 나.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여 전문성 및 다양성을 제고함(안 제6조제3항).
- 다.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이거나, 외국인투자 로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유턴선정이 가능하도록함(안 제7조제1항제1호).
- 라.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'2년 이상 휴업'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).
- 마. 매해 실태조사 실시, 실태조사 목적에 유턴기업의 정착과 성장 추가, 자료제출협조 대상을 구체화함(안 제9조).
- 바. 보증, 생산성 향상 지원, 연구개발지원, 시장개척지원,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 허용, 인력확보 위한 정주여건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개선 함(안 제12조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, 제13조, 제14조).
- 사. 동반복귀기업 요건 중 거리 인접성은 폐지하고 시간적 범위 요건을 신설하며, 지원사항을 추가함(안 제16조).
- 아. 수요-공급관계에 기반한 협력형 복귀기업의 근거를 신설함(안 제16조의2).
- 자.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사전상담 근거를 신설함(안 제17조).

#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"정보통신업 및 「산업발전법」"을 "정보통신업,「산업발전법」"으로, "지식서비스산업을"을 "지식서비스산업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업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해외진출기업이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(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고,"를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"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
-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,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

제6조제3항 중 "15명"을 "20명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"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"을 "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및 그에 따른 지원만을 받은 경우

나. 가목 외의 지원을 받은 후 10년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

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한 경우
- 7.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·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 영하지 아니한 경우

제9조제1항 중 "해외진출기업"을 "매년 해외진출기업"으로, "작성할수 있다"를 "작성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,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"로, "할 수 있다"를 "매년 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"를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"를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"를 "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"로, "관계 기관에"를 "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관계 기관"을 "기관 또는 단체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④ 정부는 제3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.
-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2조의2(생산성 향상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·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의3(연구개발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 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의4(시장개척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과 그 시행을 위

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게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히 인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인재 양성, 교통·물류시설, 문화시설, 복지·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동시설의 설치 등"을 "공동시설의 설치,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"제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"를 "이 법에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

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,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
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호 및 제5 호와 관련된 자료제공,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해외진출기업"이란 다음 각	1
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	
을 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	나
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	
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	
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	
하여 「통계법」 제22조에	
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	
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	
조업· <u>정보통신업 및 「산</u>	<u>정보통신업, 「산업발</u>
<u>업발전법」</u> 제8조제2항에	<u>전법」</u>
따른 <u>지식서비스산업을</u> 하	- <u>지식서비스산업 및 대통</u>
고 있을 것	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"국내복귀"란 <u>해외진출기업</u>	3 <u>다음 각 목</u>
<u>이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</u>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또는 축소(국내에 사업장이	<u> 우로</u>
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	

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사업장을 국내에 신설·증설하는 것을 말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4. (생략)

제6조(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) 제

- ① · ② (생 략)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.
- ④ (생 략)

제7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제 선정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

<u>.</u>
가.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
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
<u> </u>
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, 첨단산업에 해당
·
하거나, 국내 공급망 안정
에 필수적인 경우
4. (현행과 같음)
6조(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)
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 20명</u>
④ (현행과 같음)
7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
선정) ①

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 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<u>지원을</u> 받은 기업이 아닐 것

<신 설>

<신 설>

2. • 3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제8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 제정의 취소)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

1
재정적
지원을 받은 기업으로, 다음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
 <u>가.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및</u>
그에 따른 지원만을 받은
 경우
 나. 가목 외의 지원을 받은
후 10년 이상의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
 하였을 것
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18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
정의 취소) ①
•

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(생 략)
- 2.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 업하거나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·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 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
3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### ②·③ (생 략)

- 제9조(실태조사) ① 산업통상자원 저 부장관은 지원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<u>해외진</u> 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·작성할 수 있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수있다.
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 업한 경우

- 3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·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
<u>하여 운영하시 아니한 경우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네9조(실태조사) ①
해외진출기업
<u>작성하여야 한다</u> .
②
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
고,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
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
기 위하여
 하여야 하다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.

④ (생 략) <신 설>

제12조(자금지원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③ <u>제</u> 1
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
통계작성 및 제11조부터 제16조
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
<u>악하기 위하여</u>
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
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
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
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
기관
또는 단체의 장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자금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 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 록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 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 도록 할 수 있다.

④ 정부는 제3항의 보증제도를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2(생산성 향상 지원) 국
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
동력산업 분야, 소재·부품·장비
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·안전
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
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
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
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3(연구개발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 거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.

제12조의4(시장개척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입지지원) (생략)

<신 설>

제14조(인력지원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 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 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 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.

제13조(입지지원) <u>①</u> (현행	제목
외의 부분과 같음)	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과 그 시 행을 위한 하위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 귀기업에게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14조(인력지원) ① 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내복귀기업이 원활히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. 교통·물류시설, 문화시설, 복지· 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 제16조(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 워) ① -----

------공동시설의 설치,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 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

- 1. (생략)
- 2.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것

②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17조(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전설치) ① ~ ③ (생 략)

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제 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3조의 2부터 제13조의5까지 및 제14 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를 접수하고, 이를 처리기관에

<u> 령령으로 정하는</u>
·.
1. (현행과 같음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
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
으로 선정될 것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2(협력형 복귀기업에 대
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
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
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
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
수요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
원을 할 수 있다.
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7조(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
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 <u>0</u> ]
법에

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-----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 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 업 선정방법,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 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-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 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가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자료제공,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